

# 會務報告

## 第2回 定期總會以後

年月日	内 容
1957. 1957. 4. 15	第二回 科學技術賞 授賞 審查委員 45名을 委嘱함.
" 4. 18	科學技術者 處遇改善에 關한 對政 府 建議案의 起草委員을 다음과같이 委嘱함. 金東一 玄信圭 宣炳澤 諸氏
" "	第二回 定期總會의 經過報告書를 經 濟企劃院에 提出함.
1957. 4. 28	67年度 事業계획에 의한 會員명부 작成을 위한 會員名單을 提出토록 各學會에 要 望함.
" " "	科學技術會館 建立用 대지로서 鐘 路區 世宗路 81番地-1 所在 約 600坪의 市有地 를 사용코자 許可願을 서울市長에 提出함.
" 5. 19	第2回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三一堂 에서 開催함.
1957. 5. 27	傘下學會의 活動育成에 關한 政府 보조금으로 76.005.000원을 科學技術處에 신 청함.
" " "	科學技術者大會의 經過報告書를 科 學技術處에 提出함.
" 6. 7	科學技術會館建立에 所要되는 1次 年度 政府보조금 5千萬원을 科學技術處에 신청 함.
" 6. 19	第二回 科學技術者大會時 探擇된 對 政府 및 國會 建議文을 등기 우송함.
" 6. 21	會長團會議
1. 科學技術大會 決算報告	
2. 經過報告	
3. 會館建立에 關한 論議를 함.	
" 6. 23	傘下 學會(協會) 政府補助金 신청 에 關한 科學技術處로부터 回信을 接受함.
" 6. 29	同回信 内容을 傘下學會에 通知함.
1967. 7. 15	刊行委員 會議
1. 委員長 選出에서 金憲奎博士	
2. 會誌 刊行에 關하여	
가. 會誌名 部數 等을 決定	
나. 投稿規정 審議決議	
다. 揭載內容 配分決定	
" 7. 18	會誌發刊을 為한 原稿依頼를 함.
" 8. 10	停年退職한 科學技術者 現況파악 의뢰를 科學技術處로부터 받음.
" 8. 11	同把握을 傘下學會에 의뢰함.
" 8. 12	會長團 會議
1. 科學技術處 演算確保에 關한件	
가. 建議文을 作成 關係要路에 提出하고 會 長團이 個別 訪問하여 請願키로 함.	
" 8. 12	會長團會議에 의거 探擇된 建議文 을 關係要路 ① 大統領閣下 ② 國會議長 ③ 經 濟企劃院長官 ④ 科學技術處長官 ⑤ 經濟科學 審議會議長 ⑥ 共和黨政策會議議長 ⑦ 共和黨黨 務會議議長에게 即送 또는 郵送함.
" 8. 14	本聯合會 事務所를 中區 水標洞 11 의 4 電氣會館 206號室로 이전함.
" 8. 14	市內 各 日刊新聞社 및 通信社에 建 議文 寫本을 發送하여 國民與論善導를 要望함.
" 8. 19	會員名簿를 于先 理學, 工學部門分 만 印刷의뢰함.
" 8. 26	停年退職한 科學技術者 現況把握 報 告書를 1次 報告함.
" 9. 12	停年退職한 科學技術者 現況把握 程告書를 2次로 追加報告함.
" 66. 9. 29	第2次 刊行委員會議
1. 雜誌 創刊號는 聯合會의 性格 및 方向을 提示하고 次號부터는 資料를 為主로 할것.	

2. 原稿을 追加收集할것.
3. 拿下學會를 簡略해서라도 全部 소개할것.
4. 科學技術界 元老들의 座談會를 開催하여 收錄할것.
5. 寫真으로 紹介를 하도록 할것.
6. 技術土會 會長 USOM 및 處長의 原稿를 의뢰할것.
7. 韓相準氏에게 生活科學 原稿를 의뢰할것 等을 決議함.
67. 9. 29 建設部로 부터 國立公園委員會 委員候補者 推薦 의뢰에 對하여 李培咸氏 推薦함.
- " 10. 18 "科學技術 振興을 말하는 座談會"를 開催함. (本文 참조)
- " 10. 31 會誌의 刊行을 定期刊行物로 公報部에 登錄申請함.
- " 11. 6 同登錄申請을 公報部長官의 登錄許可를 받았음.
- " 11. 6 會員名簿 第1輯 印刷完了하여 配本함.

67 11. 8 會長團 會議

#### ◎ 會館問題

- ① 鐘路區 世宗路 81番地-1 坪地를 貸貸契約申請하여 于先 緣故權을 맺고 다음에 拂下 받도록 한다.
- ② 會長과 朴昌源氏 會館建立準備委員長이 市長을 訪問한다.
- ③ 계속 市當局과 결충한다.

#### ◎ 科學技術진흥 기금問題

- ① 科學技術處長次官 關係局長과 會長團이 連席會議를 開催하여 協議한다.

#### ◎ 生活科學 셰리즈 放送問題

- ① 各部門別 副會長이 出演 機關性있게 프로를 作成한다.
- ② 各企業體를 機關시켜서 原稿를 募集 宣傳效果를 보아 資金을 얻는다.

#### ◎ 其他事項

- ① 科學技術의 날을 制定하는데 歷史的根據을 고찰하여 擇할것.
- ② 全相連 教授에게 의뢰키로함.

## ◆ 投 稿 規 定 ◆

1. 投稿資格은 拿下 學會, 協會, 團體 및 그 所屬會員에 限한다.
2. 原稿는 學術報告文, 綜合論說, 資料, 抄錄, 學會活動狀況, 政策建議, 學會의 事業實績等으로 한다.
3. 모든 原稿는 刊行委員會에 受信으로 한다.
4. 投稿以外 原稿請託은 刊行委員會 名義로 한다.
5. 書式은 橫書로하고 文字는 明確히 써야 한다.
6. 報告文, 綜合論說 抄錄은 他誌에 發表되지 않은 것을 原則으로 한다.
7. 原稿의 種別은 著者가 原稿 맨 앞에 明示하여야 한다.
8. 報告文은 國文 또는 歐文(英獨佛)으로하며 각各 歐文 또는 國文의 摘要를 불여야 한다.
9. 原稿의 採擇可否는 刊行委員會에 一任한다.
10. 校正은 編輯部에 一任한다.
11. 提出된 原稿은 返還하지 않는다.
12. 引用한 文獻은 本文末尾에 著者名, 冊名, 卷, 面, 年度를 記載하여야 한다.
13. 收錄된 原稿에 對하여는 所定의 稿料를 支拂한다.